

감정평가서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사법보좌관 유기돈
건명	김미선 소유물건(2024타경3171)
감정서번호	GY202501-3-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야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강양중

감정평가액	사익일천사백칠십육만팔천육백원정(₩414,768,60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사법보좌관 유기돈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경매3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미선 (2024타경3171)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5.20	2025.05.19 ~ 2025.05.20	2025. 05. 28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20,646	토지	20,646	--	414,768,600
		이	하	여	백	
	합계					₩414,768,6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경매목적의 평가건임.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

(1) 대상물건의 개요

1) 토지

구분	기호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 상황	형상 지세	비고
토지	1	청도면 구기리 산85	15,471	임야	보전관리	임야	부정형 급경사	
	2	청도면 구기리 306	635	임야	계획관리	토지임야	부정형 완경사	
	3	청도면 구기리 307	678	대	계획관리	나지	부정형 완경사	
	4	청도면 구기리 308	1,174	임야	계획관리	토지임야	부정형 완경사	
	5	청도면 구기리 311	1,756	전	계획관리	휴경지	부정형 평지	
	6	청도면 구기리 312	932	답	계획관리	휴경지	부정형 평지	

(2) 공법상 제한사항(토지이용계획사항) 및 주위환경

별첨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기준시점의 결정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5. 05. 20일을 기준시점으로 함.

4. 실지조사를 실시한 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5.05.19 ~ 2025.05.20일의 기간 동안 대상 현장확인하여 실지조사를 하였음.

5.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6.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1) 본건 토지상의 임목 및 대나무 등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음.

(2) 본건 (기호4)토지 경계상에 별첨 ‘사진’ 과 같이 분묘소재하나,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지는 이에 구매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3) 본건은 임야의 특성, 수풀, 대나무, 잡목 등으로 육안으로 식별치 못한 분묘소재할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건 (기호6)토지는 인접필지와 경계상에 분묘 소재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지는 이에 구매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본건 (기호1) 토지상에 별첨 ‘사진’ 과 같이 분묘 기반석이 소재하나 이장여부 불분명하고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은 지적측량을 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지는 이에 구매됨이 없이 평가하였음.

(6) 본건 토지의 정확한 경계, 위치 등의 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방법

(1)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에는 대상물건을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대상 부동산의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원가법”

(2) 대상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절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3) 대상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부동산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거래사례비교법”

(4)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을 ·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대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공시지가기준법” 이 있음.

2. 감정평가의 적용

(1) 토지

본건 토지는 상기 평가방법중 “공시지가 기준법” 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방법(거래사례비교법)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일괄·구분·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III. 토지평가

가.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평가

1. 비교표준지 선정

(1) 선정표준지

【공시기준일 : 2025. 01. 01】

기호	소재지 (밀양시 청도면)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적용 필지
A	구기리 산82-1	임야	15,567	자연림	보전 관리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1,260	1
B	구기리 975-2	임야	1,005	자연림	계획 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4,240	2,4
C	구기리 293	대	684	단독 주택	계획 관리	세로 (가)	사다리 평지	84,000	3
D	구기리 315	전	731	전	계획 관리	세로 (가)	사다리 평지	41,900	5,6

(2) 비교표준지 선정 및 그 사유

인근지역 내 공시지가표준지 중 “감정평가에 관한규칙” 제14조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 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상기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시점수정(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당해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되, 2025년 05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로 인하여 직전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적용 하였음.

(1) 밀양시 보전관리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5.01.01.~2025.04.30	0.372%	2025년 04월까지 누계
2025.04.01.~2025.04.30	0.090%	2025년 04월 변동율
누 계 (2025.01.01.~2025.05.20.)	0.432% (1.00432)	$1.00372 \times (1+0.00090 \times 20/30)$

(2) 밀양시 계획관리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5.01.01.~2025.04.30	0.577%	2025년 04월까지 누계
2025.04.01.~2025.04.30	0.129%	2025년 04월 변동율
누 계 (2025.01.01.~2025.05.20.)	0.663% (1.00663)	$1.00577 \times (1+0.00129 \times 20/30)$

3.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상호대체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바, 지역요인은 대등함. (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개별요인 비교

【표준지A, 기호1】

조건	항목	세 항 목	표준지	대상	비고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1.00	0.90	임도의상태등 본건 열세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배치, 폭, 구조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1.05	경사등 본건 우세함.
	지세, 방위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1.00	1.00	대등함.
		국, 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1.00	대등함.
		기타			
격차율	0.90 x 1.05 x 1.00 x 1.00 ≒ 0.94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표준지B, 기호2】

조건	항목	세 항 목	표준지	대상	비고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1.00	1.10	인근과의 접근성 본건 우세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배치, 폭, 구조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1.00	대등함.
	지세, 방위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1.00	1.00	대등함.
		국, 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1.00	대등함.
		기타			
격차율	1.10 x 1.00 x 1.00 x 1.00 ≒ 1.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표준지C, 기호3】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차율		비 고
			표준지	본건	
가로 조건	가로의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0.90	도로의상태등 본건 열세함.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0.90	인근과의 접근성 본건 열세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 조건	일조등	일조, 통풍 등	1.00	1.00	대등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및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등과의 거리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1.00	0.60	경사등 본건 열세함.
		접면너비, 깊이			
	방위, 고저등 접면도로상태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맹지			
		방위, 고저, 경사지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1.00	1.00	대등함.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등	1.00	1.00	대등함.
		기타			
누 계		0.90 x 0.90 x 1.00 x 0.60 x 1.00 x 1.00	≒ 0.48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표준지B, 기호4】

조건	항목	세 항 목	표준지	대상	비고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등	인근지역과의 접근성	1.00	1.10	인근과의 접근성 본건 우세함.
		인근취락과의 접근성			
		임도의배치, 폭, 구조등			
		반출지점까지의 거리			
		반출지점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1.25	지세, 경사등 본건 우세함.
	지세, 방위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 위치			
		경사의 굴곡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행정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1.00	1.00	대등함.
		국, 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등의 규제			
		기타규제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1.00	대등함.
		기타			
격차율	1.10 x 1.25 x 1.00 x 1.00 ≒ 1.37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표준지D, 기호5】

조 건	항 목	세 항 목	표준지	대상	비고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0	1.00	대등함.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일조, 통풍등	1.00	1.00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면적, 경사등	면적	1.00	0.95	형상등 본건 열세함.
		경사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등 조장의 정도	1.00	1.00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1.00	대등함.
		기 타			
격차율	1.00 × 1.00 × 0.95 × 1.00 × 1.00 ≒ 0.95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표준지D, 기호6】

조 건	항 목	세 항 목	표준지	대상	비고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0	1.00	대등함.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일조, 통풍등	1.00	1.00	대등함.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면적, 경사등	면적	1.00	1.00	대등함.
		경사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등 조장의 정도	1.00	1.00	대등함.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1.00	대등함.
		기 타			
격차율	1.00 x 1.00 x 1.00 x 1.00 x 1.00 ≒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법원판례[2003다 38207(2004.05.14선고), 2002두 5054(2003.0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1991.12.28)]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비교표준지와 시가와와의 괴리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이있음.

(2) 인근 평가선례(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자료출처:한국감정평가협회】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기준시점	평가단가 (원/㎡)	평가 목적	용도지역	적용 필지
a	두곡리 산22-0	임야	1,531	2020.08.13	6,100	담보	보전관리	A
b	구기리 1096-0	임야	165	2024.07.30	45,000	담보	계획관리	B
c	구기리 000	대	502	2022.03.10	144,000	경매	계획관리	C
d	구기리 140-0	답	359	2023.06.26	100,000	경매	계획관리	D

(3) 격차율 산정

1) 산식

$$\text{격차율} = \frac{\text{평가선례 기준 표준지가격} \times (\text{평가선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치} \times \text{개별요인비교치})}{\text{가격시점까지의 표준지가격} \times (\text{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비교 선례의 선정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선례 a~d”를 선정함.

3) 평가선례의 시점수정

a: 밀양시 보전관리 지가변동율(2020.08.13.~2025.05.20.: 5.236%(1.05236)

b: 밀양시 계획관리 지가변동율(2024.07.30.~2025.05.20.: 1.251%(1.01251)

c: 밀양시 계획관리 지가변동율(2022.03.10.~2025.05.20.: 4.058%(1.04058)

d: 밀양시 계획관리 지가변동율(2023.06.26.~2025.05.20.: 2.173%(1.02173)

4) 지역요인 비교

표준지와 평가선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대등함.(1.00)

5) 개별요인 비교

① 표준지A, 선례a

비 교 목	격차율	비 교 요 인	비교
접근조건	1.15	임도의상태 등 표준지 우세함.	
자연조건	0.95	경사등 표준지 열세함.	
행정적조건	1.00	대등함.	
기타조건	1.00	대등함.	
격차율계	1.093	$1.15 \times 0.95 \times 1.00 \times 1.00 \times 1.00 \approx 1.09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② 표준지B, 선례b

비 교 목 항 목	격차율	비 교 요 인	비 고
접근조건	0.85	임도의상태, 인근과의접근성 등 표준지 열세함.	
자연조건	0.70	경사등 표준지 열세함.	
행정적조건	1.00	대등함.	
기타조건	1.00	대등함.	
격차율계	0.595	$0.85 \times 0.70 \times 1.00 \times 1.00 \times 1.00 \approx 0.595$	

③ 표준지C, 선례c

비 교 목 항 목	격차율	비 교 요 인	비 고
가로조건	1.03	가로의연속성등 표준지 우세함.	
접근조건	1.10	인근과의 접근성등 표준지 우세함.	
환경조건	1.00	대등함.	
획지조건	1.00	대등함.	
행정적조건	1.00	대등함.	
기타조건	1.00	대등함.	
격차율계	1.133	$1.03 \times 1.10 \times 1.00 \times 1.00 \times 1.00 \times 1.00 \approx 1.13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④ 표준지D, 선례d

비교항목	격차율	비교요인	비고
접근조건	1.00	도로의상태등 표준지 우세하나 인근과의 접근성 열세하여 전체적인 접근조건 대등함.	
자연조건	0.90	경작의편부등 표준지 열세함.	
획지조건	0.82	형상등 표준지 열세함.	
행정적조건	1.00	대등함.	
기타조건	1.00	대등함.	
격차율계	0.738	$1.00 \times 0.90 \times 0.82 \times 1.00 \times 1.00 \approx 0.738$	

6) 격차율 산정

① 표준지A, 선례a

평가선례 기준 기준시점의 표준지 가액					
구분	선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선례a	6,100	1.05236	1.00	1.093	7,016

시점 수정후 기준시점의 표준지가액					
구분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표준지A	1,260	1.00432	—	—	1,265

평가선례 기준가액과 시점수정후 표준지 가액의 격차율		
선례기준 표준지 가액(A)	시점 수정 후 표준지 가액(B)	격차율(A/B)
7,016	1,265	5.5462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② 표준지B, 선례b

평가선례 기준 기준시점의 표준지 가액					
구분	선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선례b	45,000	1.01251	1.00	0.595	27,110

시점 수정후 기준시점의 표준지가액					
구분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표준지B	4,240	1.00663	—	—	4,268

평가선례 기준가액과 시점수정후 표준지 가액의 격차율		
선례기준 표준지 가액(A)	시점 수정 후 표준지 가액(B)	격차율(A/B)
27,110	4,268	6.35192

③ 표준지C, 선례c

평가선례 기준 기준시점의 표준지 가액					
구분	선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선례c	144,000	1.04058	1.00	1.133	169,773

시점 수정후 기준시점의 표준지가액					
구분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표준지C	84,000	1.00663	—	—	84,55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평가선례 기준가액과 시점수정후 표준지 가액의 격차율		
선례기준 표준지 가액(A)	시점 수정 후 표준지 가액(B)	격차율(A/B)
169,773	84,557	2.00779

④ 표준지D, 선례d

평가선례 기준 기준시점의 표준지 가액					
구분	선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선례d	100,000	1.02173	1.00	0.738	75,404

시점 수정후 기준시점의 표준지가액					
구분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표준지D	41,900	1.00663	—	—	42,178

평가선례 기준가액과 시점수정후 표준지 가액의 격차율		
선례기준 표준지 가액(A)	시점 수정 후 표준지 가액(B)	격차율(A/B)
75,404	42,178	1.78776

(4) 그밖의 요인

상기의 격차율, 평가선례 및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평가목적 등을 종합참작하여 그밖의요인 표준지A: 5.54, 표준지B: 6.35, 표준지C: 2.00, 표준지D: 1.78로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토지단가 결정

상기 제요인을 참작하여 하기 산식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하였음.

산식 = 공시지가(원/㎡)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밖의요인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 교 치	개별요인 비 교 치	그밖의요인 보 정 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1,260	1.00432	1.00	0.945	5.54	6,625	6,600	
2	4,240	1.00663	1.00	1.100	6.35	29,813	30,000	
3	84,000	1.00663	1.00	0.486	2.00	82,189	82,000	
4	4,240	1.00663	1.00	1.375	6.35	37,266	37,000	
5	41,900	1.00663	1.00	0.950	1.78	71,323	71,000	
6	41,900	1.00663	1.00	1.000	1.78	75,076	75,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

1. 비교 거래사례 선정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감정평가에 관한규칙 제2조 제12의 2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시점등을 고려하여 “거래사례 e~h” 를 선정하였음.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실거래자료】

구분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지번	지목	용도지역	면적 (㎡)	거래가격 (원/㎡)	거래시점	적용필지
거래사례 e	무안면 성덕리 산000	임야	보전관리	24,893	4,700	2023.07.25	1
거래사례 f	청도면 두곡리 64-0	임야	계획관리	757	35,667	2020.10.11	2,4
거래사례 g	청도면 구기리 1297-0	대	계획관리	249	128,514	2023.10.14	3
거래사례 h	청도면 구기리 1464-0	답	계획관리	258	69,767	2024.07.03	5,6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별도의 보정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 판단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 점 수 정(지가변동율)

- e: 밀양시 보전관리 지가변동율(2023.07.25.~2025.05.20.): 1.867%(1.01867)
- f: 밀양시 계획관리 지가변동율(2020.10.11.~2025.05.20.): 6.825%(1.06825)
- g: 밀양시 계획관리 지가변동율(2023.10.14.~2025.05.20.): 2.084%(1.02084)
- h: 밀양시 계획관리 지가변동율(2024.07.03.~2025.05.20.): 1.359%(1.01359)

4. 지역요인 비교

대상토지와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5. 개별요인

구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 계	비 고
1	--	0.95	1.50	--	1.00	1.00	1.425	
2	--	0.90	0.90	--	1.00	1.00	0.810	
3	0.90	0.90	1.00	0.77	1.00	1.00	0.624	
4	--	0.90	1.13	--	1.00	1.00	1.017	
5	--	1.05	1.00	0.95	1.00	1.00	0.998	
6	--	1.05	1.00	1.00	1.00	1.00	1.050	

※기호1: 임도의상태, 인근과의 접근성 본건 열세하고, 경사등 본건 우세함.

기호2: 도로의상태등 본건 열세하고, 경사등 본건 열세함.

기호3: 도로의상태등 본건 열세하고, 인근과의 접근성, 경사등 본건 열세함.

기호4: 도로의상태등 본건 열세하고, 형상등 본건 우세함.

기호5: 인근과의 접근성 본건 우세하고, 형상등 열세함.

기호6: 인근과의 접근성 본건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토지단가 결정

상기 제요인을 참작하여 하기 산식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하였음.

산식 = 사례단가(원/㎡)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기 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	4,700	1.00	1.01867	1.00	1.425	6,823	6,800	
2	35,667	1.00	1.06825	1.00	0.810	30,862	31,000	
3	128,514	1.00	1.02084	1.00	0.624	81,864	82,000	
4	35,667	1.00	1.06825	1.00	1.017	38,749	39,000	
5	69,767	1.00	1.01359	1.00	0.998	70,574	71,000	
6	69,767	1.00	1.01359	1.00	1.050	74,251	74,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시산가격의 검토 및 가격결정

1.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試算價額)

구 분	공시지가기준법(원/㎡)	거래사례비교법(원/㎡)	비 고
1	6,600	6,800	
2	30,000	31,000	
3	82,000	82,000	
4	37,000	39,000	
5	71,000	71,000	
6	75,000	74,000	

2.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평가액은 위 같은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관련 규정에 의거 규준성이 있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산85	임야	보전관리	15,471	15,471	6,600	102,108,600	
2	"	306	임야	계획관리	635	635	30,000	19,050,000	
3	"	307	대	계획관리	678	678	82,000	55,596,000	
4	"	308	임야	계획관리	1,174	1,174	37,000	43,438,000	
5	"	311	전	계획관리	1,756	1,756	71,000	124,676,000	
6	"	312	답	계획관리	932	932	75,000	69,900,000	
합 계								₩414,768,6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소재 근기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취락,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대체적인 관내 대중교통사정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대체로 남측 하향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임.

기호2,3,4: 대체로 남측 하향 경사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2,4) 토지임야상태이며, 지상에 대나무등 소재하고, (기호3)토지는 나지로서 지상에 대나무등 소재함.

기호5,6: 대체로 부정형 및 사다리형에 유사한 평지의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이고, (기호5)지상 일부는 대나무등 소재함.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세로에 지적선 교차하나, 수풀, 잡목 등으로 접근 곤란함.

기호2,3,4: 지적도상 남서측으로 세로가 소재하나 수풀, 잡목 등으로 접근곤란함.

기호5,6: 남측으로 현황 세로가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짓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젓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젓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5,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젓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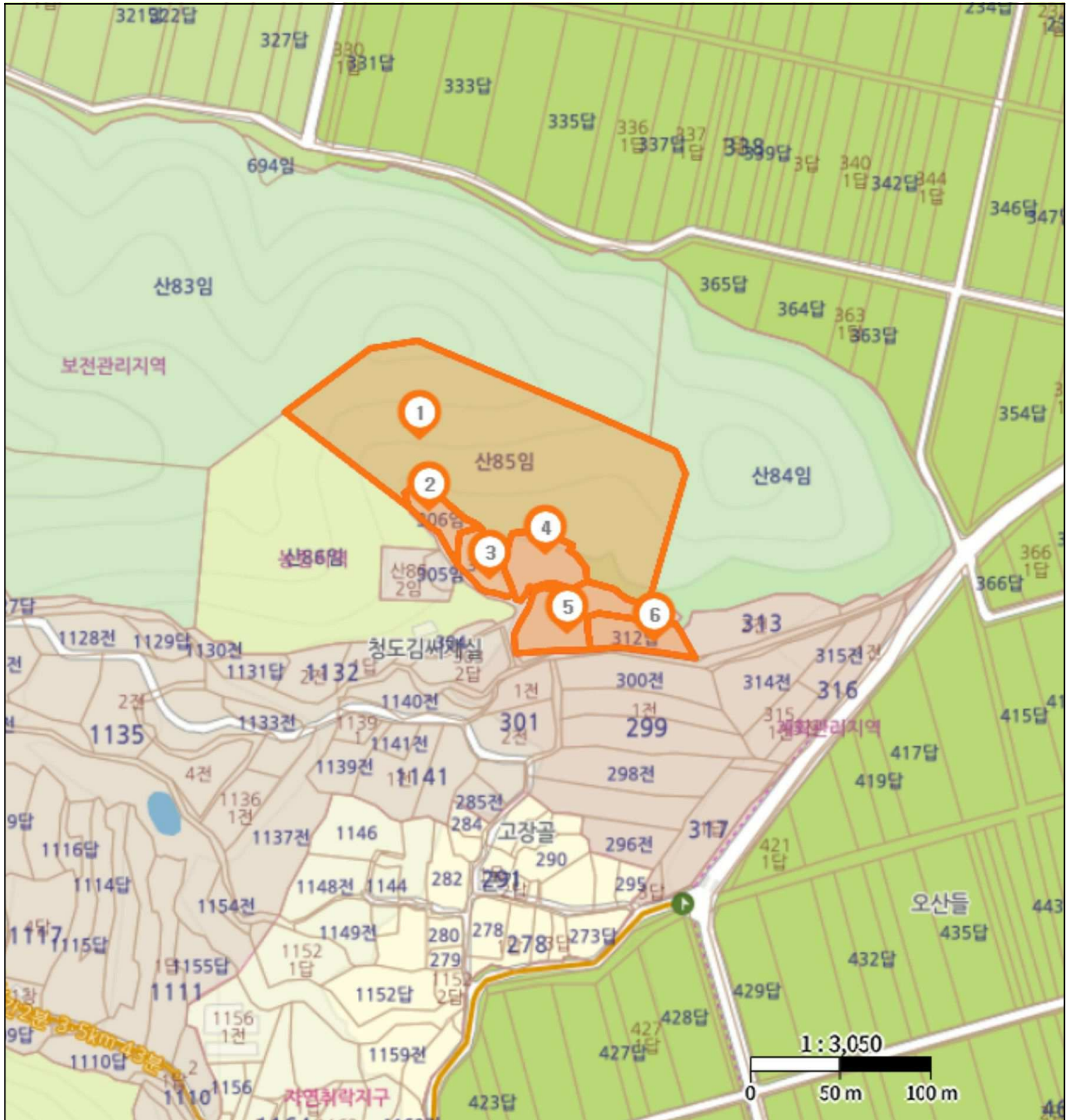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미상임.
- 2) 기 타: 없 음.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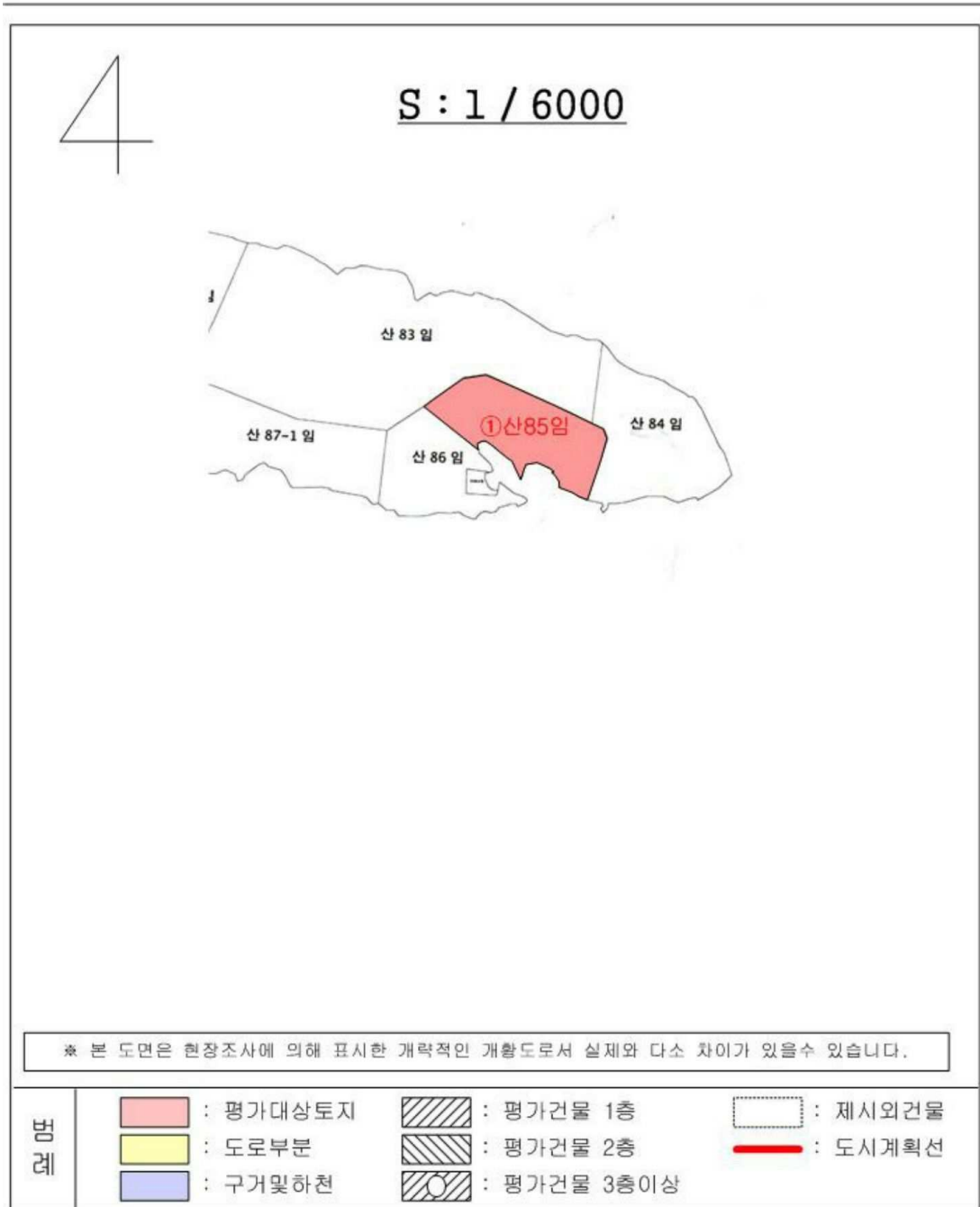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산85외



지 적 도

지적및건물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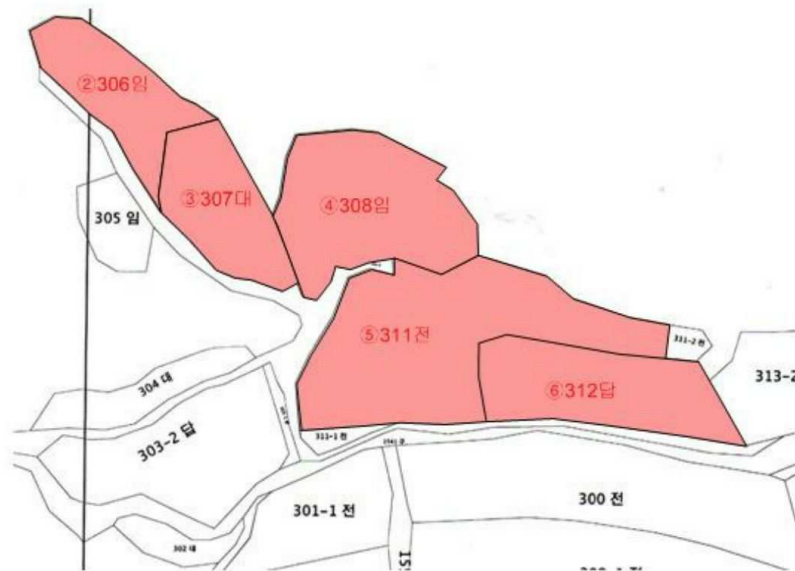


지 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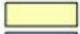




지 적 및 건물 개 황 도

4

S : 1 / 1200



* 본 도면은 현장조사에 의해 표시한 개략적인 개황도로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표 례	 : 평가대상토지	 : 평가건물 1층	 : 제외외건물
	 : 도로부분	 : 평가건물 2층	 : 도시계획선
	 : 구거및하천	 : 평가건물 3층이상	



1-6



1



2,3



4



5



6



6 ()



4 ()



1 ()



1-6